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5.03.12. 공고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계약취소주택)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

■ 변경전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 있지 않은자(외국인은 신청불가)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 변경후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 있지 않은자(외국인은 신청불가)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15-555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수원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3년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3.12.(수)	25.03.17.(월)	25.03.20.(목)	25.03.21.(금)	25.03.27.(목)

1 공통 유의사항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분양상담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서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입주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 되어 현장 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세대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3.12.(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11**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2.(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57**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청약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3.17.(월)	25.03.20.(목)	25.03.21.(금)	25.03.27.(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수원시 영통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1.09.29)**로부터 적용되며 기산일 기준 전매제한기간이 초과되어 해당이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 개시하여야 함.)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 6580호(2025.03.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5년 5월(또는 잔금 납부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5930011	01	084.5600	84	84.5600	34.9938	119.5538	89.8596	209.4134	21.6470	1
	합 계									1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없음)

약식표기	동·호	분양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84	103-504	443,296,000	492,904,000	936,200,000	187,240,000	748,96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분양가입니다.(2021.09.02.)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잔금약정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 열쇠 수령일로부터 계약자 부담)

4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 시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84	5,294,000	1,058,800	4,235,200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내역 및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품목	내용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 시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84	103-504	시스템에어컨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총5개소)	7,480,000	11,572,000	2,314,400	9,257,600
		쿡탑	인덕션3구(SK매직IHR-B310E)	460,000			
		오븐	기능성오븐(LG_Z385EBT)	400,0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삼성_DW60A5055BB)	650,000			
		디지털도어락	디지털도어락(지문인식기능)	165,000			
		현관중문	현관중문(3슬라이딩 도어)	1,050,000			
		거실 아트월	포세린타일	390,000			
		강마루	강마루(거실,주방,복도,펜트리)	827,000			
		비데	비데	150,000			

■ 무상옵션(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품목	선택사양	공급금액	선택사양
84	103-504	H드레스퀘어	파우더포함	-	-
		거실+침실2	분리형(기본)	-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 있지 않은자(외국인은 신청불가)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20.(목) ~ 2025.3.29(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3.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분양사무실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신분증	-	-현장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 2025.03.20.(목) ·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3.21.(금)(10:00~16:00)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일시 : 2025.03.27.(목) (10:00~16:00)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2829-1111-896837	㈜무궁화신탁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2829-1112-526637	㈜무궁화신탁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2019-2434-596937	현대건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태품목(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주체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5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504홍길동으로 기재)

※ 공급금액(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각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 및 계약체결 장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현금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O		본인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별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위임장		○	-	-현장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12.(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당첨자 서류접수시 제출과 중복되는 서류의 경우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계약 현황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단지 여건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2021.09.02.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에 따른 계약취소 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상호명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정원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 P&S타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에이동 218호 (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34511-0428513	110111-000790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문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031-215-5551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이 시행수탁자 겸 분양사업자인 ㈜무궁화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임을 인지하며, ㈜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정원산업개발㈜와 현대건설㈜가 부담합니다.
- 신탁계약 상 위탁사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및 위탁자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시공사(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사업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사업정산 내지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의 지위가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로 자동변경되며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의 지위 일체가 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바,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원리금 등 분양목적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합니다.